

2002. 5. 20(月)  
제80회임시회제2차본회의

제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
심 사 보 고 서

總 務 社 會 委 員 會



**【제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】**

- 이 경우 제천시의 경우 20세 이상의 주민수 106,120명으로 환산하면 2,122명 범위내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금번 개정 청구인수 200명은 합법적 범위내라 할 수 있음.
- 아울러 동 개정사항은 2002. 4. 12일부터 5.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던 바, 별다른 이견제시는 없었고 2002. 5. 10일 제천시 조례·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 하겠음.

○ 행정적 검토

- 2000. 3. 2일부터 시행된 동 조례는 2년여를 경과하는 동안 주민감사 청구가 이루어진 바 없었고 이러한 현상은 타 자치단체 역시 마찬가지였음.
- 따라서 동 조례는 물론 그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데 등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충북도에서는 청구인수를 하향 조정기로 하여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였으며 그 권고를 받아들여 청구인수를 하향 개정기로 한 것임.
- 아울러 충북도에서는 기존의 1,050명에서 100명으로 파격적인 개정을 한 바 있고, 보은군이 200명으로 개정할 것을 필두로 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각각 200명으로 수정하는 안을 의회에 상정하거나 추진중에 있어 균형을 갖춘 개정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기회로 동 조례의 운영 취지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4. 질의답변요지

“없 음”

5. 토론요지

“없 음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7. 심사보고 붙임서류

제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 끝.